

분할보고총회에 갈음하는 공고

주식회사 심텍(변경 후 상호: 주식회사 심텍홀딩스)은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1에 의거 2015년 5월 29일 개최한 임시주주총회에서 인적분할("본건 분할")하여 새로운 회사인 주식회사 심텍("분할신설회사")을 설립하고, 분할 전 회사는 주식회사 심텍홀딩스("분할존속회사")로 상호를 변경하여 존속하기로 결의한 다음, 이후 회사분할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마쳤습니다.

이에 이사회결의로써 상법 제530조의11 및 제526조 제3항에 의거하여 분할보고 주주총회를 이 공고로 갈음하기로 결정하고, 다음과 같이 분할완료 사실을 공고합니다.

- 다 음 -

1. 분할의 내용

가. 분할의 방법

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1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당사의 제조사업부문 일체를 분할하여 분할신설회사를 설립함. 본 분할은 분할하는 회사의 주주가 지분율에 비례하여 신설회사의 주식을 배정받는 단순·인적분할이며, 분할 후 분할존속회사는 "주식회사 심텍홀딩스"로 상호를 변경하여 존속하고, 분할되는 회사 및 분할신설회사는 변경상장 및 채상장 절차를 거쳐 한국거래소의 코스닥 시장에 변경상장 및 채상장될 예정임(분할 후 분할존속회사의 변경된 상호인 "주식회사 심텍홀딩스"는 본 분할의 효력발생일로부터 적용됨)

나. 주식의 병합

상법 제440조 내지 제444조에 의한 주식병합절차에 따라 분할기일 현재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들이 보유한 주식 1주당 [0.4601398]주의 비율로 병합함.

다. 분할후 분할존속회사의 발행주식총수와 자본금

발행주식총수	[15,402,829]주
자본금	[7,701,414,500]원

라. 채권자 보호에 관한 사항

상법 제530조의9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존속회사와 분할신설회사는 모두 분할되는 회사의 분할 전 채무에 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음

2. 진행경과

- 2015년 2월 23일: 이사회 회사분할 결의
- 2015년 5월 29일: 임시주주총회 분할계획서 승인
- 2015년 5월 29일: 구주권 제출 공고(제출기간 : 2015년 5월 30일 ~ 2015년 6월 30일)
- 2015년 7월 1일(0시): 분할기일
- 2015년 7월 1일: 이사회에서 분할보고 주주총회를 본 공고로 갈음하기로 결의

3. 분할등기 예정일: 2015년 7월 1일

2015년 7월 1일

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산단로 73

주식회사 심텍홀딩스

대표이사 전명석